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알리안츠 고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고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알리안츠 고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

종류(Class)	운용	C1	C2	C3	C4	C5	A2	E	I	C(P)	S
펀드 코드	52105	45682	**94286**	**94287**	**94288**	**94289**	95083	95084	53650	AD761	AQ957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02-2071-99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의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allianzgi.co.kr)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4년 09월 05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09월 15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lianz Global Investors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한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은 높은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 등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KOSPI Index 100%)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높은 배당수익률 및 장기적인 배당여력이 확보된 저평가 종목에 장기 투자하여 배당과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
- 영업의 안정성, 사업의 수익성, 일관된 배당정책, 주가의 적정성 등 당사의 내부 배당주 선정 지표를 활용하여 투자종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시장상황 및 업종별 수익전망에 근거하여 투자종목내의 투자 비중을 조절합니다.

2) 위험관리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실시하여,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변동 및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식가격은 일일 변동성이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 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 (FATCA) 및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

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의무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의무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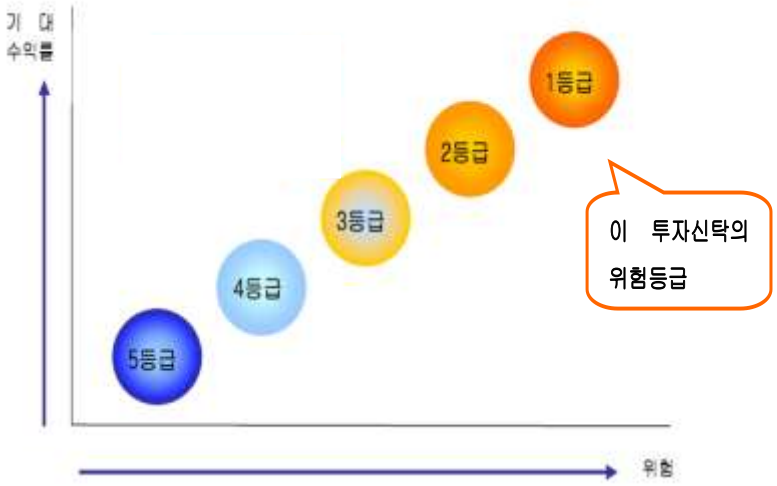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지분증권(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당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당사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작성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판매회사에서 분류하여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14.07.31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안정민 (책임운용인력)	79년생	부장	7개	925억	- 서울대학교 독문과 -2008.02~2010.02 하나대투증권 선물옵션부 - 2010.02~2013.05 메리츠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2013.08~2014.05 대신자산운용 헤지펀드그룹 - 2014.05~현재 알리안츠자산운용 주식운용팀
김유경 (부책임운용인력)	68년생	이사			- 이화여대 식품영양학 - University of Hartford MBA - 1996.07~2006.03 교보투자신탁 주식운용팀

					- 2007.08~ 현재 알리안츠자산운용

*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 보수가 약정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해당 사항 없음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2014년 8월 31일 기준 /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13/09/01~ 2014/08/31	2012/09/01~ 2013/08/31	2011/09/01~ 2012/08/31	2010/09/01~ 2011/08/31	2009/09/01~ 2010/08/31
Class C1	2004-09-01	21.85	-6.61	-6.83	9.76	6.09
비교지수	2004-09-01	5.59	-3.30	3.78	1.65	6.58

주1) 비교지수는 최초설정일부터 2009년 5월 3일까지는 (KODI Index X 87.5%) + (Call X 12.5%)로 산출, 2009년 5월 4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는 KODI Index 100%산출, 2014년 4월 1일부터는 KOSPI 100%으로 산출합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관리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lass)	가입자격	수수료(%)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A2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	납입금액의 1%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C1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	없음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C2	Class C1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C3	Class C2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C4	Class C3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C5	Class C4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E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없음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I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없음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없음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없음	3년이내 환매금액의 0.15% 이내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Class)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C1	C2	C3	C4	C5	A2	E	I	C(P)	S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0.645	0.645	0.645	0.645	0.645	0.645	0.645	0.645	0.645	0.645	매3개월
판매회사	1.500	1.375	1.250	1.125	1.000	0.700	**0.850**	0.000	**0.850**	**0.350**	
신탁업자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보수합계	2.190	2.065	1.940	1.815	1.690	1.390	1.540	0.690	1.540	1.040	
기타비용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발생 시
총보수·비용	2.190	2.065	1.940	1.815	1.690	1.390	1.540	0.690	1.540	1.040	매3개월
증권거래비용	0.668	0.220	0.214	0.216	0.215	0.668	0.668	0.668	0.668	0.214	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도(2013.9.1~2014.8.31)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년도(2013.9.1~2014.8.31)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미설정 클래스의 경우, Class C1 의 기타 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투자기간	가입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C1 수익증권	-	230	668	1,074	2,169
Class A2 수익증권	99	244	549	875	1,798
Class E 수익증권	-	162	502	865	1,887
Class I 수익증권	-	72	227	395	881
Class C(P) 수익증권	-	162	502	865	1,887
Class S 수익증권	-	109	341	590	1,305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lass C1, C2, C3, C4, C5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1년 단위로 Class C2, C3,C4, C5 수익증권으로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Class S는 10년 이상 보유를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주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3) 종류별(Class C1와 Class A2)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기준가격의 공시는 집합투자업자(www.allianzgi.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구분	15시[오후 3시]이전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	**납입일로부터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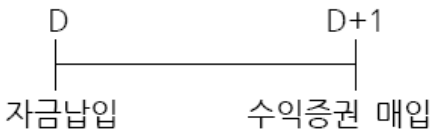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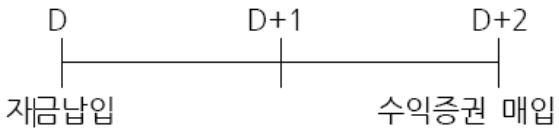
환매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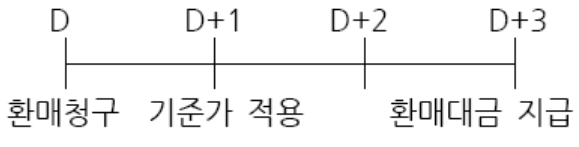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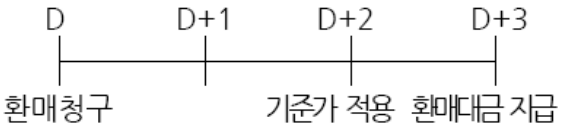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내에서 청약이 권유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1933년 미국증권거래법에 따른 규정 S의 규칙 902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의 계좌로 이전될 수도 없으며 또한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전될 수도 없습니다. 가입신청자들은 가입신청자들 본인이 미국인이 아님을 선언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신청자들은 미국인의 계좌를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의 계좌를 대리하여 가입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인들에게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취득하는 것도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전환 절차 및 방법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5 수익증권으로 전환②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③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판매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 ①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대차대조표(단위:원)			
항 목	제10기	제9기	제8기
	2014.08.31	2013.08.31	2012.08.31
운용자산	2,453,071,138	3,468,221,381	4,392,599,925
유가증권	2,385,313,470	3,305,411,540	4,214,462,350
현금 및 예치금	2,757,668	10,809,841	5,137,575
기타 운용자산	65,000,000	152,000,000	173,000,000
기타자산	128,869	49,132,447	39,215,134
자산총계	2,453,200,007	3,517,353,828	4,431,815,059
기타부채	83,543,833	114,582,018	46,041,079
부채총계	83,543,833	114,582,018	46,041,079
원본	2,369,656,174	3,743,019,293	4,604,899,909
이익조정금	0	-340,247,483	-219,125,929
자본총계	2,369,656,174	3,402,771,810	4,385,773,980
손익계산서(단위:원)			
항 목	제10기	제9기	제8기
	2013.09.01 - 2014.08.31	2012.09.01 - 2013.08.31	2011.09.01 - 2012.08.31
운용수익	378,654,632	-173,625,979	-218,256,541
이자수익	2,575,995	3,572,589	7,614,782
배당수익	39,814,941	53,028,512	58,486,180
매매/평가차익(손)	336,001,766	-230,273,213	-284,871,735
기타수익	261,930	46,133	514,232

운용비용	27,952	34,814	63,879
매매수수료	27,952	34,814	63,879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378,626,680	-173,660,793	-218,320,420
매매회전율	208.11	365.90	319.13